#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95 발의연월일: 2020. 10. 13.

발 의 자:고민정·고용진·김경만

김성환 · 김승원 · 김정호

김진표 • 도종환 • 문진석

민형배 · 신정훈 · 오영환

윤영덕 • 윤준병 • 이용빈

정일영 · 정필모 · 황 희

의원(18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들 중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이 구비되어 있는 기관들이 전체의 35퍼센트에 불과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 업무 전담임원 내지 담당임원을 갖추고 있는 기관들은 거의 전무하여 대상기관들에서 국가핵심기술 보호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적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경우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 내지 공개하더라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고, 해당행위자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해당 행위자를 처벌할 수없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주요내용

- 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핵심기술보호를 위한 인원을 지정하고 조직을 설치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안 제10조의2 신설).
- 나.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호의2 신설).
- 다. 국가핵심기술보호 인원의 지정 또는 조직의 설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국가핵심기술보호 인원의 지정 및 조직의 설치 등) ①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 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상기관의 경우 임원으로 국가핵심기술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전담조직 설치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경우 국가핵심기술보호 담 당인원 지정 및 담당조직 설치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대상기관 및 제1호·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경우 국가핵심기술보호 담당조직 설치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1. 국가핵심기술보호 담당조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핵심기술 의 보호조치 전반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또는 그에 상응 하는 사람
- 2. 국가핵심기술보호 담당조직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업무 전반을 3년 이 상 수행한 사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국가핵심기술보호 최고책임자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국가핵심기술보호 최고책임 자는 제10조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보호 최고 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핵심기술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제5항의 국가핵심기술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제3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보호 인원의 지정 또는 조직의 설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핵심기술보호 인원의 지정 및 조직 설치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보호를 위한 인원을 지정하거나 조직을 설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날까지국가핵심기술보호 인원을 지정하거나 조직을 설치하여 신고하여야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2 2/- 292 2
<u>&lt;</u> 신 설>	제10조의2(국가핵심기술보호 인원의 지정 및 조직의 설치 등)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조치를 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대상기관의경우 임원으로 국가핵심기술보호 최고책임자지정 및 전담조직설치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대상기관의 경우 국가핵심기술보호 담당인원 지정및 담당조직설치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대상기관 및 제1호·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경우 국가핵심기

 술보호 담당조직 설치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핵 심기술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1. 국가핵심기술보호 담당조직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 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전반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
- 2. 국가핵심기술보호 담당조직 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업무 전반을 3년 이상 수행한사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 및신고된 국가핵심기술보호 최고책임자는 제4항의 업무 외의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국가핵심기술보호 최고 책임자는 제10조에서 정한 국

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정 보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 상기관은 침해사고에 대한 공 동 예방 및 대응, 필요한 정보 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보호 최고책임자 를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핵심 기술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제5항의 국가핵심기 술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행위 금지) ------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신 설>

2. ~ 8. (생략)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39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

1. (생략)

<신 설>

2. • 3. (생략)

② (생략)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기 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 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2. ~ 8.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국가핵심기술보호 인원의 지정 또는 조직의 설치를 신 고하지 아니한 자
- 2.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